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방법
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·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아래 내용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

1. 설치목적 및 장소
2. 촬영범위 및 시간
3.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
4. CCTV 설치·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,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

< 안내판 설치 사례 >

